

#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 1. 제안자 및 제안경과

- 가. 의안번호 : 제975호
- 나. 제안자 : 임종국 의원(찬성자 28명)
- 다. 제안일 : 2023년 8월 7일
- 라. 회부일 : 2023년 8월 14일

### 2. 제안이유

- 서울시의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가능한 통합놀이터로 설치·조성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적용범위에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함(안 제7조제5호)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 5. 검토 의견

###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보도, 공원, 공공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대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바,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이용 가능한 통합놀이터로 설치·조성하기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공간·시설 등에 적용된다.</p> <p>1. ~ 4. (생략)</p> <p><u>&lt;신설&gt;</u></p> <p>5. (생략)</p>	<p>제7조(적용범위)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b>5.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b></p> <p>6. (현행 제5호와 같음)</p>

### 나. 검토 내용

#### (1) 현행 조례에서의 규정사항

- 현행 조례 제7조는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을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를 ‘건축물, 공공공간, 공적공간, 도로,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공공시설물, 그 밖에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설치·운영하는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

로 행정구역 안의 모든 도시공간을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및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어린이놀이기구’를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신규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임

### 「서울특별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 지원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2. "어린이놀이기구"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어린이놀이기구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의 시설은 제외한다.

###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어린이놀이기구) 「어린이놀이기구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란 **별표 2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

#### [별표] 어린이놀이기구(제2조 관련)

어린이놀이기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설치된 경우 해당 놀이기구

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2. 「도로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휴게시설
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4.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는 자의 영업소
5.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6.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7.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유아교육진흥원
8.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9.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주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
1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1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13. 어린이에게 놀이를 제공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의 영업소
14. 「건축법」 제2조제2항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1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해당 건축물 중 주택이 차지하는 세대 수가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업을 하는 자가 야영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시설

17.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
18.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박물관
19.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휴양림
20.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

## (2) 조례 개정의 타당성 검토

- 현행 조례는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를 건축물, 공공공간, 도로, 공원 등 공간적 환경 중심의 포괄적 규정과 복지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공공주택 등 공공시설 중심의 세부적 규정으로 구분하고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에 포함하여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와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와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의 구조와 위계를 고려할 때 별도의 조항을 신설하여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명시하고자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미 현행 조례가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복 규정의 우려가 있을 수 있음
- 또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추가하는 경우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 대형마트·쇼핑몰 등의 어린이 놀이공간과 같은 민간시설에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의무가 부과될 수 있고, 이는 민간의 시설개선 비용 부담 증가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감안할 때, 관련 법령이 없는 상황에서 시 조례만으로 민간시설에까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권고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어린이놀이시설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경우 적용대상을 '서울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민간시설 적용의 한계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음

#### 다. 종합 의견

- 이번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에 포함하여 장애·비장애 어린이가 차별 없이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조례의 제정 취지, 현행 조례가 규정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의 정의와 기본 이념에 부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고 판단됨
- 다만, 현행 조례는 공간적 환경 중심의 포괄적 규정과 공공시설 중심의 세부적 규정을 통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범위를 규정하고 있고, 현행 조례의 구조와 위계, 중복 규정 여부를 감안할 때, 어린이놀이시설의 경우 이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짐에 따라 조례 개정의 실익을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이 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범위가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시설까지 포함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조례 적용 대상을 '서울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로 제한하여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이와 함께 조례 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개정 또는 별도의 '어린이놀이시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시설 내 어린이놀이시설

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아울러, 전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니어 놀이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어린이, 성인, 어르신 등 ‘세대 공감 놀이공간’<sup>1)</sup>을 조성하는 등 포용적인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보편적인 ‘놀이시설’을 유니버설디자인 디자인 적용범위에 포함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

1) 2024년 성수1플레이파크 사업(액티브디자인 개발) : 신체활동이 부족한 아동·청소년 및 지역주민들이 커뮤니티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 활동함으로써 건강을 증진하고 교류하는 세대융합형 공간 조성, 일부 공간에 안전한 난간 설치, 완만한 경사로와 낮은 계단을 만들어 어르신은 물론 휠체어, 유모차 등의 편리한 진입을 돕도록 디자인 설계